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다나온 정바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9810호, '19.6.4. 공포, '19.6.12.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만조(滿潮)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도 본도 제외)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에는 검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제16조의2 신설)
- 동신판매업자가 닭·오리 식육, 포장육, 달걀을 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축산물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 제외(제21조제7호가목·바목 및 같은 조 제8호)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행정관청에 지체없이 이물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6조의6 및 별표 4 제2호저록 신설)

2. 개정된 사항은 2019.06.04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810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시·도 축산물 관리 부서, 축산물 관련 단체

주무관

김은정

사무관

심찬구

농축수산물정책과 2019.6.4.

최과장

인영순

편조자

시행 농축수산물정책과-2497 (2019. 6. 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품안전처)

전화번호 043-719-3211 팩스번호 043-719-3200 / atpoint@korea.kr / 대국민 공개

임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대통령령 제298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도서·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제21조제7호가목1) 중 “경영하는 자”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경우”를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1조제7호바복2) 중 “슈퍼마켓 등 소매업 점포”를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으로, “경우”를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복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1조제8호 단서 중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를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판매하면서”를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로 한다.

제26조의6을 제26조의7로 하고,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불유동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

입·판매업

제2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이물(異物)”을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이하 “이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 중 “영업정지처분 또는”을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31조제1항에 제8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별표 1의 제목 중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범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범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2호저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의4			
1)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